

이천시 시세 조례 중 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천시 시세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2002년 3월 4일 이천시로부터 제출되어 2002년 3월 5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 되었음.

1. 제안 이유

- 정수율 제고를 위한 경품제 도입과
-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인증 획득도축장에 대한 도축세율을 인하하여 도축업체의 시설투자동 경영 비용을 보전
- 기타, 현행 세제 체계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시세 조례 일부 개정

2. 주요 골자

- 납세자 경품권 추첨 조항 신설 (안 제14조의3)
- 대상 세목: 재산세, 종합토지세, 자동차세
-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인증 획득 도축장에 대한 도축세율 특례 조항 신설(안 부칙)
- 대상 세율: 소, 돼지 도살하는 가격의 1,000분의 5

3. 법적 근거

- 특례 도축세율은 지방세법 제234조의2 제3호 및 제234조의7의 규정에 의거.
- 경품제는 이천시 자체적으로 신설.

4. 검토 의견

- 납세자 경품권 추첨제는 납세의무 이행에 따른 만족감과 보상 기대 심리를 통한 납기내 징수율 제고에 목표를 두고 시행코자 하나, 국민의 당연한 납세의무에 대하여 경품제를 실시하는 것은 협세를 낭비한다는 비난을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시행착오가 없도록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오며
-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인증을 획득한 도축장에 대하여 도축업체의 시설투자등 경영 비용 보전을 위한 도축 세율을 인하하는 것은 지방세법 제234조의2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위임 근거를 두고 있어 가능하고 바람직한 제도이겠으나, 특례 조항을 본문이 아닌 부칙에 기술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됨.
- 부칙이란, 본문에 부수하여 그 법령의 시행일과 그 법령의 시행에 수반되는 경과조치, 그리고 그 법령의 시행에 따라 필요한 다른 법령의 개정 사항 등을 규정하는 것이므로
- 특례 도축 세율을 본문에, 시행기한은 부칙에 다음과 같이 수정하여 기술함이 법리에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됨.
 - 본문에 제36조의1 조항을 신설하여,
“제36조의1(특례세율)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인증 획득 도축장에서 도축하는 소, 돼지의 도축세율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소 : 도살하는 소 가격의 1,000분의 5
 - 돼지: 도살하는 돼지 가격의 1,000분의 5 ”
 - 부칙에는 본 특례 조항 시행 기한을 다음과 같이 기술
“제36조의1 특례 세율은 2003년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